

## 우석대학교 정보보호동아리 APS(Actively Protect Security) 회칙

APS

# 차례

제 1 장 총칙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4 장 운영진

제 5 장 회장

제 6 장 팀장

제 7 장 인턴

제 8 장 운영

제 9 장 재정

제 10 장 회칙의 개정

제 11 장 소집

제 12 장 휴가

부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을 "APS(Actively Protect Security)"(이하 "APS"라 한다)라 한다.  
온라인상 동아리 주소는 "http://www.aps.or.kr"를 이용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칙은 "APS"에서 제공하는 운영지침으로 회원의 조건 및 절차,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란 동아리를 대표하고 동아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진"이란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중심이 되는 인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운영진을 제외한 활동 인원을 말한다.
4. "팀장"이란 구성원 중 스터디 팀을 만들었을 경우 그 내의 장을 말한다.
5. "구성원"이란 동아리의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의미한다.
6. "인턴"이란 정규 회원 전에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준회원을 말한다.

제 4 조 (동의) "APS"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본 "APS" 회칙에 동의함과 같다.

##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5 조 ①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 학생
2. 정보보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
3. 미래에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4.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정기 모집 시 구성원들과 회의를 통해 입회를 결정한다.

제 6 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구성원은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2. 구성원은 동아리 운영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3. 구성원은 동아리실의 자원에 대해 사용권을 가진다.

**제 7 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동아리의 활성화에 기여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제 8 조** 각 구성원은 보안에 관련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제 9 조** 각 구성원은 보안에 관련된 팀을 만들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진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3 장 회 원**

**제 11 조** 회원은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 12 조** 회원은 동아리 운영에 있어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

**제 13 조** 회원은 나이, 선·후배, 기타 지식적 능력을 불문하고 운영진의 운영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하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따라야 한다.

### **제 4 장 운 영 진**

**제 14 조** 운영진은 부회장, 총무, 서버관리자, 인사관리를 기본으로 때에 따라 회장 및 운영진은 업무를 중복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영진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있어 사안이 긴급한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한 후에는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무는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도 아니 되며, "APS"의 공동 재산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비리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제 17 조** 서버 관리자 및 인사관리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므로 이를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정보 유출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운영진 선출은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9 조** 운영진은 연임할 수 있다.

### **제 5 장 회 장**

**제 20 조** 회장은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격을 가진다.

**제 21 조** 회장의 자격이라 함은 동아리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군필 또는 면제자를 말한다.

**제 22 조** 회장의 선출은 전임 회장과 운영진이 추천하며,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회장은 동아리의 방향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통하여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회장은 동아리 운영에 있어 사안이 긴급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구성원들에게 공포 하여야 한다.

**제 25 조** 회장은 운영진의 운영에 있어 부적절 함을 보고 및 발견 시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제 26 조** 운영진의 임무에 있어 불성실할 경우 회장은 언제든지 운영진의 직책을 파면시킬 수 있다.

**제 27 조** 회장은 자신의 직책을 남용 또는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장 팀 장

**제 29 조** 팀장이라 동아리 활동에 있어 그룹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그룹 장을 말한다.

**제 30 조** 팀장은 그룹 원들의 스터디 능력을 항상 체크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운영진 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인 턴

**제 31 조** 인턴은 동아리의 정규 회원이 되기 전의 직급을 말한다.

**제 32 조** 인턴은 동아리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를 할 수 없고 관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33 조** 인턴이 동아리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를 하려 할 경우 모든 구성원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제 34 조** 인턴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

## 제 8 장 운 영

**제 35 조** 회원의 정기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모집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2. 당해 모집인원은 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신청자들은 1달 이상의 선별 기간을 거치고, 선별된 인원들에 한해 임원들의 회의를 거쳐 입회를 결정한다.
4. 비정기 모집의 경우는 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6 조** 운영에 있어 회원의 자격의 박탈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활동에 있어 매사에 불만이 많거나 비 적응 또는 불성실하게 할 경우 회장 및

- 운영진의 동의하에 동아리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정기 모임에 3번 이상 불참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운영진이 박탈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판단하에 제외).
  3. 스터디 자료 준비에 있어서 불성실함을 꾸준히 보여줄 경우 팀장이 1차례 경고 후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팀장이라 함은 스터디의 장, 회장도 포함된다.)
  4. 기타 동아리 활동에 있어 문제시 되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회장 및 운영진들의 동의하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5. 자격박탈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

### **제 37 조 기타 운영 사항**

1.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진은 대 내외적으로 동아리를 대표하여 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진은 최종 결정된 안건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4. 운영진은 본 회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총무는 동아리의 살림꾼으로써 동아리의 활성화에 앞장선다.
6. 운영진은 동아리의 주요 안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식 모임 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한다.
7. 동아리 구성원은 정식 모임에 불참한 경우 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8. 운영진은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9. 운영진은 행사 진행시 안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에 필요시 회원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0. 동아리 내 결정 사항은 회장의 최종 결재 후에 이루어진다.

## **제 9 장 재 정**

### **제 38 조 재정**

동아리 내 모든 재정은 회비로 충당 된다

### **제 39 조 회비**

동아리의 회비는 회당 1만원으로 한다.

회비는 동아리 운영 외의 경우 외에 사용될 수 없다.

### **제 40 조 회비의 관리**

회장, 총무가 책임진다.

#### 제 41 조 결산

회장 및 총무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지한다.  
회비가 모두 지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비로 이월한다.

## 제 10 장 회칙의 개정

#### 제 42 조 개정 발의

회칙 개정 발의는 회원 수 1/2 이상의 건의로 회의에서 발의한다.

#### 제 43 조 의결

본회의 회칙 개정 의결은 재적 2/3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 시 회칙은 과거의 회칙에 준한다.

## 제 11 장 소 집

#### 제 44 조 회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 45 조 정기회의

회의는 매 학기 동아리 구성원의 시간에 맞추어 정한다.

#### 제 46 조 특별회의

회장에 재량에 따라 평일에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

## 제 12 장 휴 가

#### 제 47 조 휴가

1. 모든 휴가 결정은 회장에게 있다.
2. 하루 휴가 인원은 총 인원의 20%로 한다.
3. 초과 인원 발생 시 회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단, 부재 시 권한은 운영진에게 위임된다.
4. 모든 휴가는 반차로 사용이 가능하다.
5. 포상 휴가는 그 해(년도)까지 유효하다.
6. 한 달 최대 휴가는 8일로 제한한다.
7. 동아리 활동 부재로 인한 경고 누적 2회당 1일을 제한한다. (예: 서버점검, 보안뉴스) 허나, 그 심각성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으로 제한 일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48 조 정기휴가**

1. 정기휴가는 하계, 동계 당 각 8개를 부여한다.
2. 상황에 따라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제 49 조 반차**

1. 반차는 13시 이후 사용하는 휴가를 반차라 한다.
2. 반차는 사유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 **제 50 조 포상휴가**

1. 대회 입상 시 3일을 부여한다.
2. 모범 동아리원에게 1일을 부여한다. 모범 동아리원은 회장에 의해 결정하되, 운영진과 상의 후 결정된다.
3. 동아리 중요 활동 시 회장의 권한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예: 학과시연 활동은 학교 당 반차 1회)
4. 운영진에게 2개월 당 1일을 부여한다.
5. 프로젝트나 기타 활동 팀장 시 1일을 부여한다.

## **부칙**

#### **제 1 조**

1. 본 동아리 회칙은 운영진의 의결 통과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게시함으로써 즉시 발효된다.
2. 본 회칙은 개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회칙의 효력**

1. 본 회칙은 "APS"의 웹 사이트와 동아리방 게시판, 네트워크 저장 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의 변경은 동아리 회장과 운영진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동아리 방에 게시(또는 공지)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기존에 가입된 회원은 본 회칙의 효력 발생일 이후 계속 회원 활동을 하게 되면 본 회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3년 9월 7일

정보보호 동아리 APS(Actively Protect Security)